



제1680호

2022년 5월 6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8 8 4 호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토 지 정 보 과 2
- 공 고 제 8 9 2 호 2022.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세 무 과 5
- 공 고 제 8 9 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교 통 행 정 과 10
- 공 고 제 9 0 2 호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공고 생 활 경 제 과 13
- 공 고 제 9 1 1 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의 밤샘주차)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23
- 공 고 제 9 2 7 호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 획 예 산 과 25
- 공 고 제 9 3 2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36
- 공 고 제 9 3 3 호 2022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총 무 과 40
- 공 고 제 9 3 5 호 취득세 5월 공시송달 세 무 과 41
- 공 고 제 9 3 7 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43
- 공 고 제 9 4 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초등학교 외 5개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교 통 행 정 과 45
- 공 고 제 9 4 6 호 「남동구민축구단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체 육 진 흥 과 50
- 공 고 제 9 4 7 호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 획 예 산 과 57
- 보 건 소 공 고 제 3 7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 품 위 생 과 100
- 보 건 소 공 고 제 3 8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 품 위 생 과 102

고 시

- 고 시 제 3 6 호 20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세 입 징 수 과 104
- 고 시 제 3 7 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공사)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 시 재 생 과 106
- 고 시 제 3 8 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간석4동 청사 신축공사)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 시 재 생 과 108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884호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

- 기 준 일 : 2022.1.1.기준
- 대 상 : 42,458필지
- 결정·공시일 : 2022.4.29.
- 결 정 내 역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 2022.4.29. ~ 5.30.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 방 법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2)453-6152~615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지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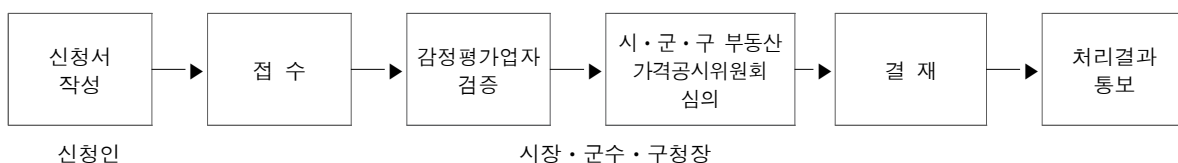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8]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minwon.go.kr).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Appellant's Opinion	
	Reasons to Appeal			KRW/m ²	

Pursuant to Paragraph (1) in Article 11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 as above.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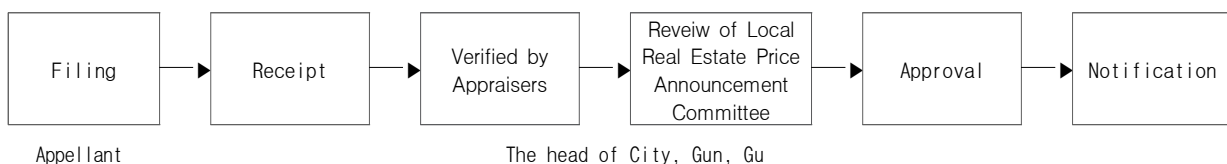
Appellant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	---	------------

Proceedings



Appellant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m²)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892호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남 동 구 청 장**1.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22년 1월 1일
- 나. 개별주택수: 8,186호(단독 1,564호, 다가구 2,858호, 주상용 3,764호)
- 다.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 라. 열람방법 및 장소: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남동구청 세무과 주택평가팀

2. 이의신청방법

- 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2-453-2419)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남동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남동구청 세무과에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022.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22.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2년 4월 29일 ~ 5월 30일 * 공시일: 4월 29일
 -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개별주택: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남동구청 세무과 주택평가팀 열람
공동주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콜센터(☎ 1644-2828), 한국감정원 앱 및 남동구청 세무과 열람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2년 4월 29일 ~ 5월 30일)
- (제출자)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방법) 개별주택: 남동구청 세무과 방문·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공동주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인천지사) 및 남동구청 세무과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
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이름
나이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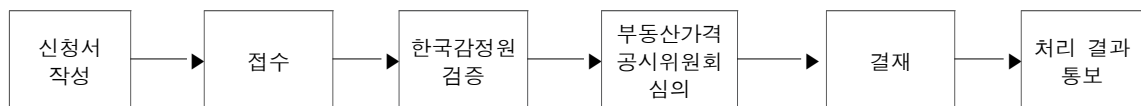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5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이의신청 접수 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 명)

(서 명)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89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0-1번지 일원에 방문자와 거주자들이 실제 사용 가능한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고자 하춘로 노상 공영주차장을 유료 전환하는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남 동 구 청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남동구 만수동 1000-1번지 일원의 주차난 해소, 주차질서 확립 등 이용자의 편익 제공 실제 사용 가능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공영(노상)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
3. 공영(노상)주차장 개요

주차장명	위 치	면수	급지	유료화 시행 예정
하춘로 노상 공영주차장	남동구 만수동 1000-1번지 일원	145	2급지	2022. 6. 2

4. 주차요금

주차장명	구 분	급 지	1회 주차권		전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초30분	15분당		
하춘로 노상 공영주차장	노상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5. 공고방법 :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4. 29. ~ 2022. 5. 18.(20일간)

8. 의견제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 운영』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2. 4. 29. ~ 2022. 5. 18.(20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남동구 교통행정과(주차시설팀)
 - 전 화 : 032)453-2685 / FAX : 032)453-288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예 고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하촌로 노상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0-1번지 일원 하촌로에 설치 되어 있는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 - 902호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공고

「남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8조 및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69호)과 관련하여 2022년도 남동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2. 5. 9. ~ 11. 30.(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마감)
3. 지원금액 : 20,000천원
4. 지원대상
 -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 (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
 -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나.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자
 - 다. 남동구 소재 1가구당 하나의 에너지원에 한하여 지원
 - 라.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며,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태양광 대
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5.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에너지원	기준용량	지원단가	보조금 지원금액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태 양 광	3.0kW (고정식)	217/kW	5,163 (100%)	2,580 (50%)	650 (12.5%)	650 (12.5%)	1,283 (25%)
태 양 열	6㎡급 (자연순환 온수기)	800/대	8,054 (100%)	4,020 (50%)	800 (10%)	800 (10%)	2,434 (30%)
지 열	17.5kW	135/kW	23,625 (100%)	11,810 (50%)	2,360 (10%)	2,360 (10%)	7,095 (30%)
연 료 전 지	1kW	3,360/kW	33,644 (100%)	16,820 (50%)	3,360 (10%)	3,360 (10%)	10,10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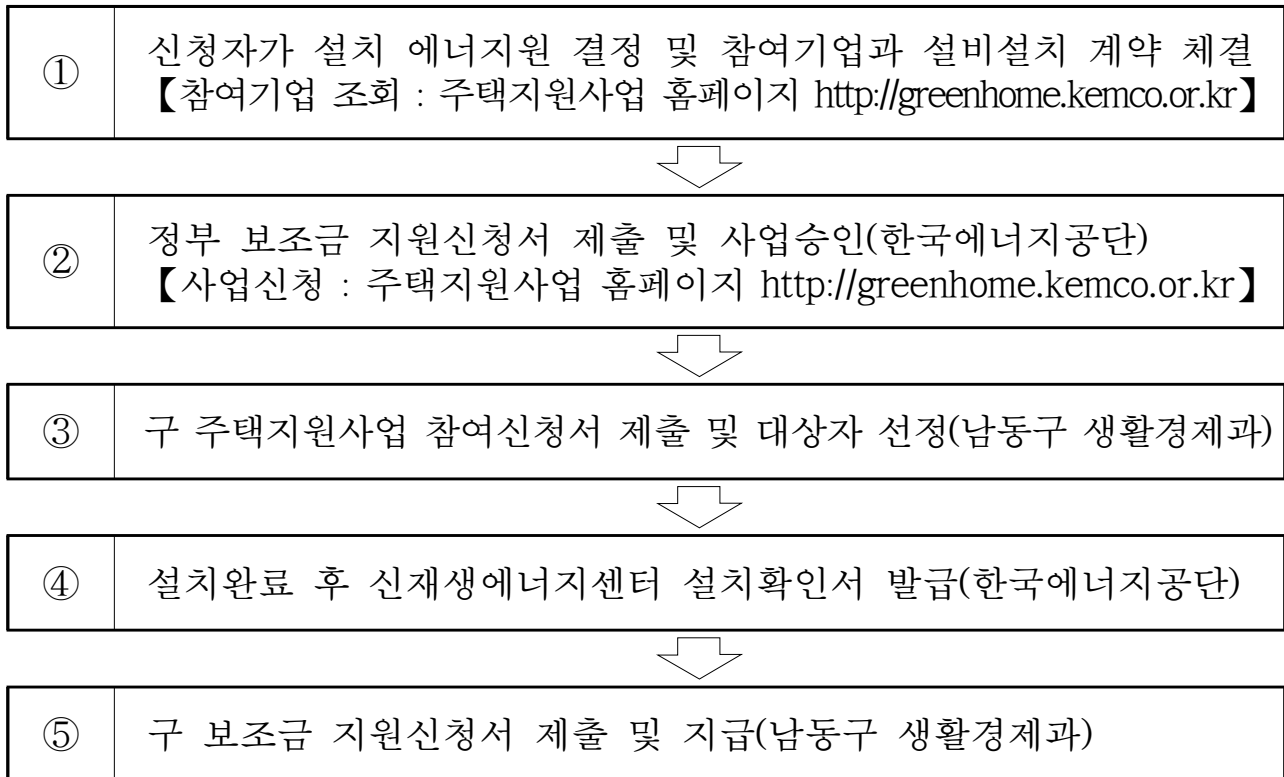
6. 시공기준

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69(2022. 4.25.)호의 기준을 따름

7. 시공기한

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정한 설치완료 기한 내에 시공하여야 함.

8. 사업신청 절차



9. 사업참여 신청

가. 신청기간 : 2022. 5. 9. ~ 10.30.(예산 소진시 선착순 접수 마감)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평일 09:00~18:00)

다. 접 수 처 : 남동구청 생활경제과(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7층)

라. 기타사항

-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보완 완료시점을 접수일자로 인정
- 참여기업 선정에서부터 설비 설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설비 시공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정한 참여기업 중에서 선택하여야 함.
- 참여기업에서 대리 신청 가능하나 2개 사업 이상을 일괄 신청 시에는 신청자 자체 순번에 따라 접수

10.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가. 신청기간 : 2022. 5. 9. ~ 11.30.

- 신청기간 내 보조금 미신청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2.11.30.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제외(접수확인서 제출)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평일 09:00~18:00)

다. 접수처 : 남동구청 생활경제과(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7층)

라. 기타사항 : 보조금은 설비 설치주택의 신청자(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032-453-6122)로 문의

[별지 제1호 서식]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신 청 자 (건물소유자)	연락주소		(설치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		
설치주소	우편번호()				
연 락 처	전 화 :		이동전화 :		
설비용량	태양광 : kW, 태양열 : m ² , 지열 : kW, 연료전지 kW				
설치기간	2022. . . ~ 2022. . .				
설치계약일	2022. . .				
사 업 비 (원)	총공사비	정부보조금	시보조금	군구보조금	자부담
참여기업			담당자		
			연락처		
활용목적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탄소배출권)에 대한 권리는 인천광역시에 귀속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인)

참여기업 (인)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대상 장소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2. 설치 예정 장소 현장사진 1매 및 약도 1부
3.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1부
4. 한국에너지공단 참여신청 및 사업승인 확인 자료(홈페이지 화면캡처 인쇄)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현황]

- 업무처리기관(부서) : 생활경제과 · 업무구분 :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
- 사업명 :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업 체 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u>인천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u>에 사용됩니다. ① 업무처리과정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청렴해피콜) ② 청렴시책 홍보 및 공직자부조리신고 안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대상인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시기	매년 7월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제공항목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보유기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인)

핸드폰번호 :

이 때 일 :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주택지원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확인 후 (확인) 동일하게 작성

※ 체크 후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에너지원별 확인 사항에 확인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참여기업	신청자
○ 주택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이하 ‘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국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 하에 참여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확인)
○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확인)	(확인)
○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평가 후 예치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확인)
○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이후에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확인)	(확인)
○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확인)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확인)
○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 사업기한 연장요청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설치완료기한 준수여부는 참여기업 선정 시 활용예정)	(확인)	(확인)
○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확인)	(확인)

<태양광>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1. “태양광” 발전 권장 설치용량을 참고하여 설치 용량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2.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태양열>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1. “태양열” 설비는 급탕을 주 용도로 사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2.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지열>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1. 천공 깊이 준수 등 설비의 안정적인 열원 확보를 위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2. 난방설비(가스/전기/심야전기보일러)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3.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4.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5.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연료전지>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1.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2.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3.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참여기업 대표 : (성명) (서명)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신청자 (생년월일)		연락주소	(설치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		
설치주소	우편번호()				
연 락 처	전 화 :		이동전화 :		
설비용량	태양광 : kW, 태양열 : m ² , 지열 : kW, 연료전지 kW				
시보조금	금 원				
사 업 비 (원)	총공사비	정부보조금	시보조금	군구보조금	자부담
설치기간	2022. . . ~ 2022. . . (설치완료일)		설치확인일	2022. . . .	
설치계약일					
참여기업			담당자및 연 락 처		
지급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 주택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탄소배출권)에 대한 권리는 인천광역시에 귀속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인)

참여기업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발행)사본. 1부.
※ 신축의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1부
2. 건물전경(전·후) 및 설비 설치사진 1부.
(태양광 : 모듈 및 인버터 전력량계 / 태양열 : 집열기 및 축열조 / 지열 : 히트펌프 및 기계실 내부, 천공작업사진 등)
3. 신청자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 1부.

참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주택)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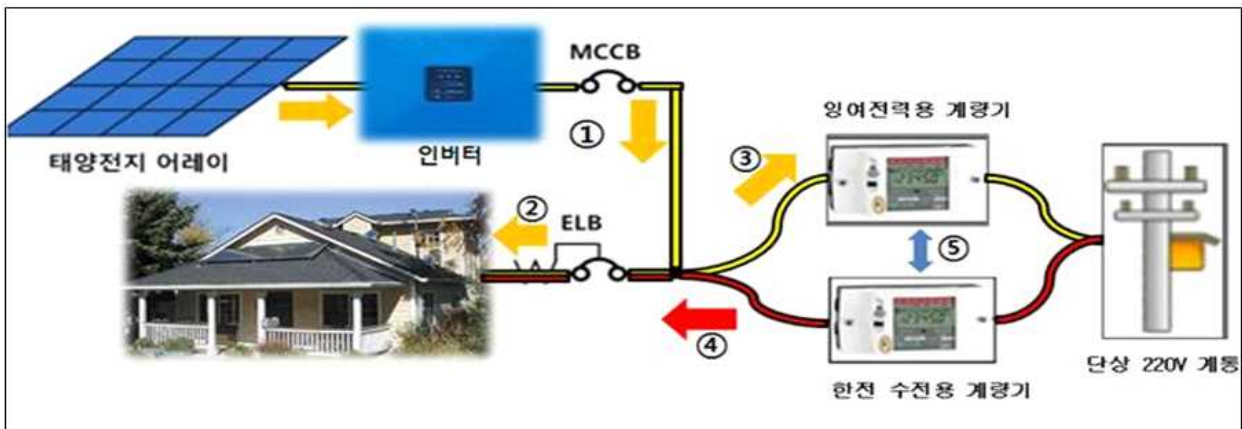
- 2012년 1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기 설치된 수전용 계량기¹⁾ 외에 잉여전력용 계량기²⁾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됨

1) 수전용 계량기란?

- 일반적 건물에 설치된 계량기로 한전으로부터 수전 받아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을 표시하는 계량기

2) 잉여전력용 계량기란?

-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발전량이 건물에서 소비한 전력량보다 많을 경우 잉여 전력량 (발전량-소비량)을 표시하는 계량기



-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건물에서 바로 소비되므로 (수전용, 잉여전력용)계량기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발전량이 전기 소비량 보다 클 경우만 잉여전력용 계량기에 표시

<전기사용량 계산 흐름도>

- ①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건물의 전기 계통에 연결 됨
- ② 발전된 전기를 건물에서 소비
- ③ 자가 생산.소비 후 남은 잉여전력량을 잉여전력용 계량기에 표시
- ④ 자가 생산.소비 후 부족하여 한전으로부터 수전 받은 전력량을 수전용 계량기에 표시
- ⑤ 전기 사용량(수전 전력량 값) — 잉여전력량(잉여전력 계량 값)
= 전기요금계산 값(최종 전기 사용량), 사용요금은 상계 후 전력량에 대해 부과하며 부가세는 수전 전력량, 잉여전력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9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3. ~ 2022. 5. 17.(14일간)
2.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의 밤샘주차)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				
성 명	차량번호	주소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박*현	인천84바**94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량	인천85바**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14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길*희	인천81바**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선	인천86바**8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105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현	인천84바**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4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가*희	인천84바**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이*구	인천84바**6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4.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T. 032-453-2916)로 직접방문,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5월 3일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927호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2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적극행정 관련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개정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염병 예방접종비 지원 신설 : 안 제7조제12호
- 적극행정 위임사항 상위법령 근거 조문 개정 : (안 제1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상위법령 근거 조문 개정 : (안 제2조)
- 적극행정 심의 관련 상위법령 근거 조문 개정 : (안 제3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 신설 : (안 제4조)
 -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기획예산과 (만수동)
- 연락처: ☎ 453-6222 FAX 453-20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입법예고)

4. 참고사항

- 「행정기본법」 제4조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제13조, 제17조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6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적극행정 관련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개정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적극행정 위임사항 상위법령 근거 조문 개정 : (안 제1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상위법령 근거 조문 개정 : (안 제2조)
- 적극행정 심의 관련 상위법령 근거 조문 개정 : (안 제3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 신설 : (안 제4조)
 -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행정기본법」 제4조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제13조, 제1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10조제2항”을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남동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 ----- 법 제7조제1항----- ----- ---. -----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 ----- -----.
<신 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
5호까지의 사항

2. (생략)

<신설>

<신설>

제2호에 관한 사항

2. ----- 제4
호-----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
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
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
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 제1
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
대조치 외에 「남동구 표창 조
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932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2.5.3. ~ 2022.5.18.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강제처리 공고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이륜차 8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

2022년 5월 3일

남 동 구 청 장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2-0003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2.4. ○ 견인일 : 2022.3.14.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동 777 자전거거치대
	2022-0004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2.07. ○ 견인일 : 2022.3.14.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로 45 논현 휴먼시아3단지아파트 301동 1층로비 자전거보관소 옆
	2022-0004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2.07. ○ 견인일 : 2022.3.14.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로 45 논현 휴먼시아3단지아파트 6지하주차장 계단 밑
	2022-0004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2.07. ○ 견인일 : 2022.3.14.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로 45 논현 휴먼시아3단지아파트 313동 뒤 자전거보관소 옆
	2022-0004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2.07. ○ 견인일 : 2022.3.14.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로 45 논현 휴먼시아3단지아파트 316동 앞 자전거보관소 옆

관
리
번
호

2022-0004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2.07.
- 견인일 : 2022.3.14.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로 45 논현 휴먼시아3단지아파트 319동 경비실옆 7지하주차장 계단 밑

2022-0004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2.11.
- 견인일 : 2022.3.16.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구월동 1223-32 만월하우징 앞 이면도로

2022-0005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2.22.
- 견인일 : 2022.3.21.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간석오거리역 5번출구 리더스타워 A동 앞 자전거거치대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명령서	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22-0003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 777 자전거거치대	2022.3.14.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2	2022-0004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로 45 논현 휴먼시아3단지아파트 301동 1층로비 자전거보관소 옆	2022.3.14.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3	2022-0004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로 45 논현 휴먼시아3단지아파트 6지하주차장 계단 밑	2022.3.14.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4	2022-00042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로 45 논현 휴먼시아3단지아파트 313동 뒤 자전거보관소 옆	2022.3.14.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5	2022-0004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로 45 논현 휴먼시아3단지아파트 316동 앞 자전거보관소 옆	2022.3.14.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6	2022-0004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로 45 논현 휴먼시아3단지아파트 319동 경비실옆 7지하주차장 계단 밑	2022.3.14.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7	2022-0004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동 1223-32 만월하우징 앞 이면도로	2022.3.16.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8	2022-0005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오거리역 5번출구 리더스타워 A동 앞 자전거거치대	2022.3.21.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933호

2022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제2항 등의 개정에 따라, 동법 제9조 및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도 남동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재공표합니다.

2022년 5월 3일

남 동 구 청 장

(단위: 명)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투표청구 주민수 (총수의 1/13)
합 계	내국인 (19세이상 주민등록자)	외국인 (19세이상 영주권취득자)	
443,018	441,199	1,819	34,079

- 내국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주민
- 외국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18세 이상의 외국인

※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총무과 [(032)453-2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935호

취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성 명	장**환 외 14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서 류 의 내 용	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남 동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역(취득세 수시분)

연번	주민법인번호	납세자명	과세번호	세목	등기발송일	공고사유	세액합계
1	810604-*****	장**환	101501 2022 04 2 550 012368	취득세	2022.04.11.	수령인 없음	13,968,000
2	580416-*****	정**성	101501 2022 04 2 582 012374	취득세	2022.04.11.	수령인 없음	16,712,540
3	410923-*****	황**순	101501 2022 04 2 700 012359	취득세	2022.04.11.	수령인 없음	45,639,13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937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처 분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2. 5. 3. ~ 2022. 5. 18.
3. 공고대상 : 22우3895외 25대 (별첨)
4.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 의 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1)

2022년 5월 3일

남 동 구 청



구분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등록일	등록사유
1	22우3895	Passat 2.0 TSI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	2022.04.29	소유자 요청
2	68루2135	마티즈	BA**AR SOSO***RAM	2022.04.29	소유자 요청
3	150허3762	팔리세이드(PALISAD E)	신한카드(주)	2022.04.29	소유자 요청
4	48호6957	맥스크루즈 (MAXCRUZ)	신한카드(주)	2022.04.29	소유자 요청
5	46하6878	싼타페(SANTAFE)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	2022.04.29	소유자 요청
6	145허8115	Q7 45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	2022.04.29	소유자 요청
7	384서1712	Q8 50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	2022.04.29	소유자 요청
8	26러4106	e-tron Sportback 55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	2022.04.29	소유자 요청
9	56하3922	G80	신한카드(주)	2022.04.26	소유자 요청
10	24하1253	쏘나타(SONATA)	신한카드(주)	2022.04.26	소유자 요청
11	55하7674	아반떼(AVANTE)	신한카드(주)	2022.04.22	소유자 요청
12	41누2963	A4 2.0 TFSI	이**	2022.04.21	소유자 요청
13	66다8055	E250 CDI 4Matic	조**	2022.04.21	소유자 요청
14	124다6732	렉서스 RX450h	토요타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주)	2022.04.18	소유자 요청
15	128호5499	K5	신한카드 주식회사	2022.04.18	소유자 요청
16	23호4783	그랜저(GRANDEUR)	신한카드(주)	2022.04.15	소유자 요청
17	49하7719	카니발	신한카드(주)	2022.04.12	소유자 요청
18	128호2811	G80	신한카드(주)	2022.04.08	소유자 요청
19	31러5008	Passat 2.0 TSI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	2022.04.06	소유자 요청
20	24하2584	아반떼(AVANTE)	신한카드(주)	2022.04.06	소유자 요청
21	128하5068	K3	신한카드 주식회사	2022.04.06	소유자 요청
22	54노7903	Q3 35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	2022.04.06	소유자 요청
23	242로8370	A6 40 TDI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	2022.04.06	소유자 요청
24	351우6161	A6 45 TFS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	2022.04.06	소유자 요청
25	69노6334	그랜저(GRANDEUR)	김**	2022.04.01	소유자 요청
26	29다0337	Q3 35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	2022.04.01	소유자 요청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94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초등학교 외 5개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초등학교 외 5개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기능(신호, 과속)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4일

남 동 구 청 장

1. 행정예고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초등학교 외 5개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목적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초등학교 외 5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기능(신호, 과속)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목적 및 주요내용(설치위치)을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의 대상(6개 학교, 8개소)

연번	학교명	설치위치	수량	장비	설치시기	비고
1	석정초등학교	통학로	2	다기능	2022. 6.~8.	
2	석천초등학교	통학로	1	다기능	2022. 6.~8.	
3	상아초등학교	통학로	1	다기능	2022. 6.~8.	
4	정각초등학교	통학로	1	다기능	2022. 6.~8.	
5	새말초등학교	통학로	2	다기능	2022. 6.~8.	
6	만수북초등학교	통학로	1	다기능	2022. 6.~8.	
합계	6개 학교		8			

※ 사업 위치도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5. 4. ~ 2022. 5. 24.(20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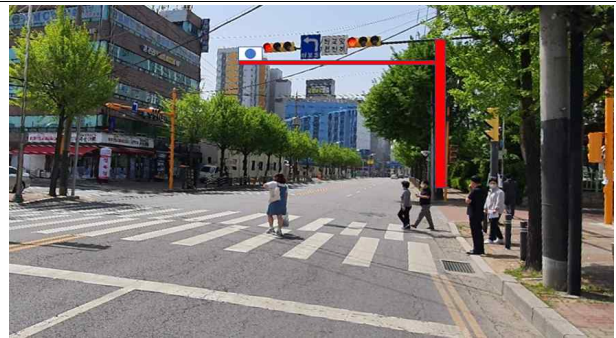
7.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2. 5. 4. ~ 2022. 5. 24.(20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서식 참조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 교통행정과(주차시설팀)
 - 전 화 : 032)453-2688 / FAX : 032)453-289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붙임 1】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정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위치도

1. 석정초등학교 일원 (벽돌막사거리→이화사거리)



2. 석정초등학교 일원 (이화사거리→벽돌막사거리)



3. 석천초등학교 일원 (전재울사거리→간석오거리)



4. 상아초등학교 일원 (상인천초교→상인천중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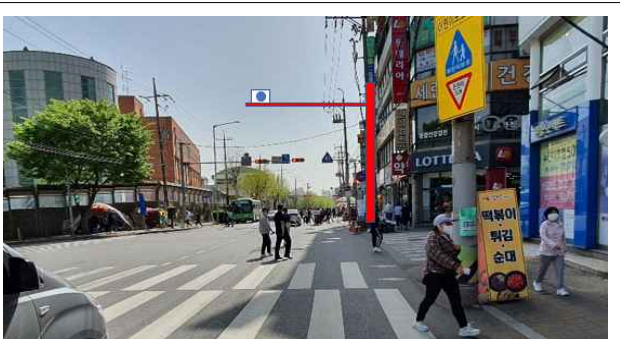
5. 정각초등학교 일원 (정각사거리→삼성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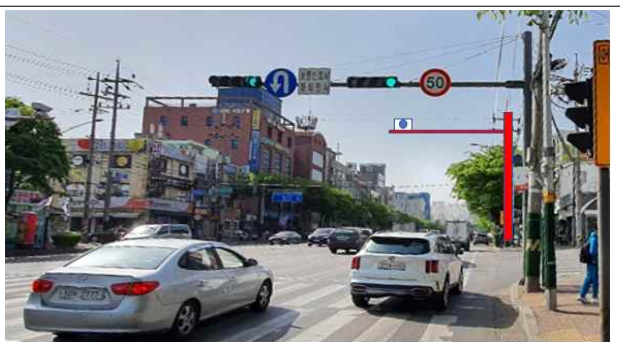
6. 새말초등학교 일원 (만수근린공원→새말초교)



7. 새말초등학교 일원 (미추홀학교→만수여중)



8. 만수북초등학교 일원 (만수역→만수소방서)



※ 화살표는 차량 주행방향임.

[붙임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 수집·이용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의견서 제출 시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e-mail
- 보유·이용기간 :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까지
- 동의의 거부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접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 . .

성명

(서명)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2-946호

「남동구민축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4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민축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지역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남동구민축구단 지원을 위한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 남동구민축구단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구청장은 구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축구단 사업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3조)
- 구민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 등의 사유로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고 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음 (안 제4조~제5조)
- 구민축구단에게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를 할 수 있음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체육진흥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6273 FAX 453-21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6조 및 제18조

남동구민축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5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민축구단을 적극 육성·지원하여 53만 남동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화합과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행복한 남동구의 초석을 다지기 위함
- 지역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남동구민축구단 지원을 위한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 남동구민축구단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구청장은 구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축구단 사업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3조)
- 구민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 등의 사유로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고 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음 (안 제4조~제5조)
- 구민축구단에게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를 할 수 있음 (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국민체육진흥법」 관련조문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민축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남동구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남동구민축구단(이하 “구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구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고 남동구와 연고지 협약을 한 축구단을 말한다.

제3조(구민축구단 지원)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축구단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축구단의 운영
2.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
3.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훈련 및 유소년 축구단 운영
4. 경기 및 응원 등을 위한 구민축구단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구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구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말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민축구단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경기장 우선사용) 구청장은 구민축구단에게 주경기장으로 남동공단근린공원운동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경기장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구청장은 제3조 제2항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민축구단에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947호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4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1. 7. 13.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보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예산 계상(計上)신청이 없는 경우의 예산 계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4조)
-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 ☎ 453-2062, FAX 453-20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6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21.7.13.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변경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보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하고자 기존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의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예산 계상(計上)신청이 없는 경우의 예산 계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중요재산의 보고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 사.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4조)
- 자.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차. 조례 개정 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부칙 안 제2조~안 제4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구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남동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구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 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위원으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에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지방보조금 관리”를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 전단 중 “제11조와 제13조”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0조제2항 전단 중 “제11조와 제13조”를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

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②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남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남동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남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로 한다.

⑧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7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로 한다.

- ⑭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⑮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⑯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⑰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⑱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⑲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⑥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⑦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⑧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⑨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⑩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①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②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③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④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⑤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⑥ 「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로 한다.

③⑦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⑧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⑨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⑩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⑪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⑫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③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④ 「남동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⑤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 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⑥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⑦ 「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⑧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로 한다.

④⑨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⑩ 「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⑪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⑫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⑬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 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⑭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 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로 한다.

㉔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6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남동구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1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2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3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4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5 「남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6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7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8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9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0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frac{1}{\sqrt{2}}, \quad \frac{1}{\sqrt{2}}, \quad \frac{1}{\sqrt{2}}$$

남동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이
가
다

남동구청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
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9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7장 벌칙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

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69, 3735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해야 할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10조(실적보고서의 검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를 적어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와 제1항에 따른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할 때의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산정할 때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6.>

1.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 결과를 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에 등록·관리해야 한다.

제17조(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 및 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의 내용

3.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역

4. 그 밖에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명

단 공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등의 공표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37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2. 5. 16.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4. 29. ~ 2022. 5. 13.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일반음식점	2016-0200068	지구라운지	김**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36, 1층 111호 (논현동, 라마다인천호텔)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04-15	2022-05-16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2. 5. 13.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
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22년 4월 29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22-38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2. 5. 18.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5. 3. ~ 2022. 5. 17.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일반음식점	2018 -0202806	인어공주 생일상횃집	신**	인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9, 1층 115호,116호,117호(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04-11	2022-05-18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2. 5. 17.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
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2년 5월 3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36호

20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2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2년 4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그 외 일반납세자
연 장 기 간	2개월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2. 8. 31.	2022. 8. 31.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분	제외대상
손실보상 대상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영세 자영업자 (외부조정 미만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금융 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남동구청 세입징수과(☎032-453-2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37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공사)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재무과 ☎032-453-2812, 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년 5월 6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54-1번지 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칭: 남촌도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3. 사업규모

- A=1,000.2㎡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재무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남촌동	354-1	대	826	826	남동구청	-	
2	남촌동	354-9	대	174.2	174.2	남동구청	-	
합 계				1,000.2	1,000.2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38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간석4동 청사 신축공사)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간석4동 청사 신축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재무과 ☎032-453-2812, 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년 5월 6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5-17 외 5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칭: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3. 사업규모

- A=1,429.7㎡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재무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간석동	575-17	대	679.4	679.4	남동구청	-	
2	간석동	575-9	대	156.3	156.3	남동구청	-	
3	간석동	575-10	대	155.3	155.3	남동구청	-	
4	간석동	575-11	대	148.3	148.3	남동구청	-	
5	간석동	575-15	대	149.9	149.9	남동구청	-	
6	간석동	575-16	대	140.5	140.5	남동구청	-	
합 계				1,429.7	1,429.7			